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1. 29.(수) 09:33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3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5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9년도 1~2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20-06-023~025)**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019년도 1~2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송관리팀장 보고해 주십시오.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 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를 <붙임1>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4> 사실조사 대상 선정입니다. 방통위를 비롯한 기상청, 행안부 등 정부는 '19년도 1월과 6월 사이에 총 63건의 재난방송을 방송사에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 부산영어방송 라디오 1건, 제주MBC TV 2건, MBN TV 1건 등을 재난방송 의무위반 의심 사례로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방심위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3개 방송사 4건을 사실조사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5>번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위반내역입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9일 인천 백령도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정보에 대해 재난방송을 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MBC TV는 2019년 2월 10일 지진속보와 3분 후에 요청한 지진정보에 대해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MBN TV는 2019년 6월에 발생한 호우 경보에 대해

재난방송을 1분 후에 실시했지만 주요 재난 발생 시각, 재난명, 재난지역을 빠뜨리고 방송 하였습니다. 사업자 의견은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실 사항이나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사업자 측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지금부터 2019년도 1~2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전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주)제주문화방송, (주)매일방송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피심인 관계자 입장)**

멀리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난방송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과태료 처분 당사자인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주)제주문화방송, (주)매일방송 측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이신 조승완 님 맞습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예, 맞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주)제주문화방송 보도국장이신 현제훈 님 맞습니까?

○ **현제훈 제주문화방송(주) 보도국장**

- 예, 맞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주)매일방송 편성국장이신 정현석 님 맞습니까?

○ **정현석 (주)매일방송 편성국장**

- 예, 맞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의견진술 과정에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피심인 측에서 이번 시정조치안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주)제주문화방송, (주)매일방송 순으로 차례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부산영어방송의 조승완 본부장입니다. 먼저 저희 일로 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월 지진 재난방송을 하지 못한 점은 저희 직원의 착오로 인해 빚어졌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 착오로 인해 방송하지 않았던 그런 지간의 사정이 있었기에 그러한 정상을 참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월 지진이 났을 때 저희로서는 '이 재난방송은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직원 담당 책임자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재난방송 담당자들과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전인 2018년도에 '지진의 경우에는 자기 관할구역만 방송하면 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지침에 따라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 이후 2개월 후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진의 경우 3.5 이상은 어느 권역이든 간에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기에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지진 방송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 1월 지진에 대해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을 따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처분이 나왔는지, 저희로서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 보름 전쯤 2017년도에 재난방송 책임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재난방송 관리체계'라는 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부랴부랴 그 담당 책임자는 이미 저희 회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 책임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그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관리체계라는 것이 여러 문서로 굉장히 많은 분량이다 보니까 아마 그 담당 책임자가 그 중간의 일부 구절인데 '3.5 이상 발생 시에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를 놓친 것 같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을 2017년에 받았다는 것입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2017년에 받은 것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을 회사에서는 모르고 담당자만 알았다는 것입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담당자만 알고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전혀 전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원이 퇴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바로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재난 담당하시는 분과 같이 카톡하는 과정에서 '자기 관할구역만 방송하면 된다'는 이야기만 믿고 그렇게 방송을 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직원의 착오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던 점은 분명히 사죄드리고 인정하지만 저희에게 부과된 과태료 1,500만원은 사실상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첫째는 공문 형태로 오지 않고 담당 책임자에게 이메일로 형태로 오는 바람에 착오가 빚어졌다는 점, 그리고 당시 지진이 부산에서는 굉장히 먼 백령도 해역

에서 발생했고, 지진규모도 3.7로서, 재난방송 기준인 3.5에서 0.2를 초과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지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도 있어서 사실상 꼭 해야 하는 지진 규모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려주신 지침에 대해 저희가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TTS라는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영어로 번역해서 방송하는 시스템도 갖추면서 이행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직원이 16명에 불과한 영세한 라디오방송사인데 과태료 1,500만원은 저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셔서 또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계도기간이라는 것도 있는 만큼 이번에는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에게 처분 수위를 대폭 낮춰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하나씩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다른 사업자들도 있으니까 사실 관계에 대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위반사실은 본부장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고요.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다만, 착오가 있었다, 그것은 2017년에 이메일을 통해 지진 3.5인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담당자에게 왔는데 그것을 그 직원이 공문이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있다가 퇴직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르고 있다가 '18년도 1년 뒤에 서로 카톡방에서 방통위 직원과 '자기 권역이 아니면 방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리고 '19년 1월 9일 재난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었다는 것이지요?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런데 알고 보니까 '17년 이메일을 받은 적은 있었다, 공문은 아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일단 위반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관리체계상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달라는 것이지요?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제주문화방송(주) 모두 발언해 주시지요.

○ **현재훈 제주문화방송(주) 보도국장**

- 제주문화방송 재난방송 책임을 맡고 있는 보도국장 현재훈입니다. 1년 전쯤 작년 2월 10일 낮 1시 전·후에 지진정보와 지진속보를 두 차례 받았지만 TV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상황을 설명드리면, 야간이나 휴일에는 재난방송 데이터 수신을 받는 회사 PC와 동시에 제가 재난방송책임자여서 보도국장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같이 들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자메시지를 TV 구조정실 근무자에게 전달해서 그것을 수동으로 자막작업을 해서 하단 스크롤을 재난방송 자막으로 처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2시간 정도 뒤늦게 문자 수신을 확인했고, 당일이 일요일이고 제가 휴무일이어서 2시간 정도 뒤늦게 재난방송 문자 확인을 했습니다. 지진이라는 재난방송 특성상 2시간 후에 과연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판단으로 재난방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서 당일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 곧바로 사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해서 이와 같은 열악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해서 3월에 바로 비주얼리서치사에 ‘재난방송 실시간 송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는 3.0, 해역에는 3.5 기준으로 해서 재난방송 매뉴얼에는 처리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육상·해상 다 3.0 기준으로 해서 재난방송 요청이 오면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1년 가까이 해 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진 두 차례 재난방송 실시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다만, 그 즉시 이런 재발방지가 재난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그동안 비용적인 측면에서 미루어왔던 부분을 바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 온 부분은 정상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지역 특성상 태풍 시기에 가장 많이 TV로 재난방송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재난방송을 실시해 왔고 그동안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작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방송사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서 과태료 양형에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석진 부위원장

- 12시 54분이라고 했는데 낮 시간대입니까? 일요일 낮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현재훈 제주문화방송(주) 보도국장

- 예, 일요일 12시 54분 한 차례, 3분 후인 57분 한 차례 총 두 차례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으로는 (주)매일방송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 정현석 (주)매일방송 편성국장

- 안녕하십니까? MBN 편성국장 정현석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작년 6월 6일 방통위에서 요청한 재난방송 문자 자막의 앞부분을 빠뜨리고 방송을 했었는데, 이는 핵심정보인 재난지역과 재난종류를 누락했고 방송을 한 것으로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그 해당 자막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방송 송출과정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한 실수였다는 것을 소명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호우경보는 재난속보와 다르게 자동송출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클라이언트에서 수신한 내용을 근무자가 한 차례 확인한 다음에 이 문구를 자막송출 시스템에 직접 컴퓨터 마우스로 문장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송출시스템에 붙여 넣어서 자막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빠른 시간 내에 속보를 방송해야겠다는 욕심에 문장 전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문자 일부분만을 선택해서 복사하고 송출시스템에 붙여 넣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이 당사는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으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으며, 또 재난방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면서 거기에 타사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하려는 욕심에서 벌어진 단순 실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어떻게 하든 방통위에서 요청했던 재난방송을 성실하게 실행해 왔고, 단 한 차례도 방송을 미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1조가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해 주시고, 과태료를 경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책임 부서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근무자를 자체적으로 징계를 해서 시말서도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근무를 하는 전원들을 다시 한 번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다시 인지시키는 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송출을 담당하는 사람하고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간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왔다는 점도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질의하거나 자료요청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 김석진 부위원장

- 확인을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MBN는 화면의 하단 스크롤 홀림자막으로 '호우경보가 완도지역에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마우스로 끌어서 복사하는 과정에서 다 복사가 안 돼서 나갔지 않습니까?

○ 정현석 (주)매일방송 편성국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재난방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데, 대개 홀림자막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 정현석 (주)매일방송 편성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누락된 채로 여러 차례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해서 나중에 다시 제대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 정현석 (주)매일방송 편성국장

- 일단 그 부분이 3번 정도 잘못되어서 나갔는데 근무자가 그것을 인지 못 해서 계속 그대로 나간 것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수정해서 제대로 된 원본이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 정현석 (주)매일방송 편성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 김석진 부위원장

- 모두 발언이 끝났으니까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부산영어방송에 묻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이 FM 라디오지요?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재난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 방송을 끊고 진행자가 또는 아나운서가 영어로 재난방송 내용을 공지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것은 TV 화면이 아니고 라디오이기 때문에 방송을 중간에 끊어야 합니다.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03시 14분 심야 새벽시간에 녹음방송이었습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녹음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녹음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재난방송 요청이 와도 그것을 끊고 누가 들어가서 육성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야근 인력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TTS라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재난 담당자가 문자를 받으면 그것을 번역해서 시스템에 넣으면 영어로 자동으로 송출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이 언제입니까? 1월 9일은 그것이 갖추어 있지 않았습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2018년 말로 기억합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18년 말에 TTS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1월 9일 새벽 3시에는 이것이 작동 안 된 것이네요?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작동은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재난 담당자가 '이것은 우리 권역이 아니니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 착오를 했던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결국 '18년 7월에 카톡으로 방통위 직원과 이런저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지진의 경우라는 것을 그런 대화는 없었기 때문에 착오를 한 것이지요?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지진은 무조건 3.5, 지상에는 3.0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다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잠시 제가 말씀드릴까요?
- 김석진 부위원장
  - 아까 다 들었으니까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아주 짧습니다. 물론 '17년도에는 저희 이메일로 그 담당책임자가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내용을 받아서 그 사람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도 사실 몰랐던 것입니다. 2018년도에 카톡 내용을 보면 '지상파방송사는 자신들의 방송허가 권역 내에 해당하는 재난정보만 재난방송 하면 됩니다. 전국방송사는 전국사항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재난 담당자가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카톡을 보낸 사무처에 묻겠습니다. 카톡방 개설된 것이 전국 재난방송 담당자들과 카톡방을 개설해서 주고받은 것입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재난방송 의무방송사업자 담당자들과 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런데 지진 이야기는 왜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문의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진에 한정해서 저희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재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었던 것이고, 질문하셨던 것도 부산영어방송 측에서 질문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보시면 포항 지진 관련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분이 “이번에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데 방송사 자율로 해당지역이 아니면 송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진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 김석진 부위원장

- 이것이 나중에 확인이 필요한 대목 같습니다. 이것이 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심야 새벽에 직원 16명밖에 없는데 또 영어라디오방송이고 라디오인데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TV는 흘림자막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라디오 같은 경우 방송을 끊고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지금 부산영어방송뿐만 아니고 광주영어방송 등 여러 군데서 이런 것으로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소식 다 들으셨습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물론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판단을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앞으로 관리체계에 그런 허술한 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난방송 담당자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고, 특히 심야 야간 근무자들에게 본부장님이 반드시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알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돌아가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진은 무조건 다 재난방송 해야 한다는 것 이번에 확실히 아셨지 않습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렇게 해서 점검해 주십시오. 제주문화방송에게 묻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도 물론 휴무니까 밖에 휴식을 취하고 계신데, 이것이 12시가 넘어서 낮 1시쯤에 벌어진 일인데 그것을 뒤늦게 확인하신 것도 그렇고, 또 휴무인 본부장에게 재난방송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는 그 시스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휴무일 경우 휴일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셔서 이리이러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판단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빨리 연락을 해라, 그런데 연락이 안 되어서 한두 시간 지난 뒤에 이것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방송하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묻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지진 이라면 전 국민이 굉장히 여기에 날카롭게 신경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4.0입니다. 그러면 포항에서 지진이 나면 목포보다는 멀지만 제주가 바로 밑입니다. 어쨌든 해역이기 때문에 제주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지진소식인데 그냥 한두 시간 뒤에 봤다고 '재난 지금 해 봤자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 그냥 목살하자' 저는 도대체 그런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데 메이저 방송사입니다. 지금 영어방송 직원 16명 있는 곳도 '18년도에 이미 TTS 자동송출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제주MBC가 메이저 3대 방송 중 계열사인데 이런 것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판단도 잘못하셨고, 휴무일 업무체계에 완전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TTS도 도입이 늦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봐줄 여지가 없습니다. 조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많이 반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휴무 근무일, 특히 휴일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묻겠습니다.

○ **현재훈 제주문화방송(주) 보도국장**

- 지금 현재는 도입했기 때문에 휴일이든 야간이든 TV 구조정실 근무자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TV는 뭐가 문제입니까? 자동시스템 TTS에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흘림자막이 쭉 흘러갑니다. 방송을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디오방송은 방송을 심야에 끊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문제지만, TV가 이렇게 안이하게 재난방송을 다룹니까? 특히 지진정보이고 포항이고 여기는 제주인데, 그래서 엄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십니까?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부산영어방송재단 조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난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자연 재난방송은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자연재난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해일, 태풍, 지진 굉장히 많지요.

○ 허 욱 상임위원

- 지진, 해일, 태풍, 풍수해 등 총 9종류나 됩니다. 9종류 전체에 관해 카톡 메시지로, 예를 들면 '특정 권역에만 해당합니다'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당합니다'라고 세세하게 카톡에서 다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아마 일부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영어방송을 제외하고 그 카톡을 본 나머지 사업자들은 재난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저희 직원의 실수가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착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책임을 면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 책임 분명히 있고 잘못도 한 부분이 있지만 그 직원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모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이 꼬이려고 했는지, 바로 그 전 카톡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 허 욱 상임위원

-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지요?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카톡의 대화 메시지 내용들이 면책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면책은 아니지만 조금 감형될 수 있는 정상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으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오늘 출석한 방송

사업자 측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완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 저희 영어방송은 분명히 저희의 착오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정상을 참작하셔서 처분 수위를 낮춰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현재훈 제주문화방송(주) 보도국장**

- 제주문화방송은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 즉각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현석 (주)매일방송 편성국장**

- MBN은 재난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좀 더 열심히, 남보다 좀 더 빠르게 하려고 하다가 일어났던 단순한 실수라는 점을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위원장님 사실확인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사업자는 처음으로 위반을 했고 지진 관련해서도 처음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영어방송재단에서 말씀하신 것은 1월 지진이고, 방금 제주문화방송은 2월 지진에 대해 재난방송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부산영어방송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지진에 대해 저희가 재난방송 요청을 2019년 1월 이전에 19차례 요청했는데 부산영어방송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산에서 일어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영어방송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 **한상혁 위원장**

- 팀장님, 그것은 의견청취 마치고 나중에 의견 이야기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피심인 측 의견진술인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난방송 실시 위반 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관계자 퇴장)

의견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이면 몰라도 진술인들과 다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사무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4페이지 <다>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부산영어방송재단이 인천 백령도 해역에 발생한 지진에 대하여 해당 권역 내 지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진의 특성상 해당권역 외 재난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제주문화방송(주)은 동일한 지진의 지진속보와 지진정보 2건의 재난방송 요청에 대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다만 동일한 지진에 대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는 1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MBN의 경우에는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재난명, 재난발생시간, 재난발생지역 등 재난 핵심정보를 누락하여 방송한 것은 법령에 따른 재난방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제주문화방송(주), (주)매일방송 등 3개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요청에 따른 재난방송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1조 [별표] 에 따라 <붙임2>의 위반내역에 대해 <붙임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기준금액은 1,500만원이고, 1,500만원 기준금액에서 50% 범위 내에서 감경과 가중이 가능한데 50% 감경 시에는 750만원, 50% 가중 시에는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 후에는 해당 방송사에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감경·가중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1,500만원 기준으로 감경하면 750만원, 가중하면 2,250만원인데 각 사업자별로 어느 경우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처 의견이 없으신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그동안의 사례를 봐서 세 방송사업자 모두 처음 위반사례니까 50% 감경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안건 가>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과장님일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부산영어방송 같은 경우 쪽 해 왔다는 부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오늘 안건에도 있지만 부산영어방송은 1월 9일 지진에 대해 방송하지 않았고, 제주MBC는 2월



10일자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자에 부산영어방송은 방송을 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2월 10일자는 호우경보이지 않습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아닙니다. 제주MBC가 하지 않았던 것은 포항 지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지진이 여러 건 발생했었고, 지진 재난방송 요청을 했었는데 지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위반사례가 없었습니다. 오늘 2건이 발생했는데 19건의 지진에 대해 재난방송을 요청했는데 부산영어방송, 나머지 방송사도 다 방송했었는데 19군데 지진 발생지역이 다 부산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정리하면 부산영어방송은 1월 9일 위반 딱 한 차례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자기 권역이 아니었더라도 지진 재난방송을 다 해 왔다는 것이지요?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유독 이것 하나 빠졌다는 것이지요?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런데 해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전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뜻이지요?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리고 카톡 이야기인데 카톡은 분명히 카톡방에서 부산영어방송이 지진에 관한 문의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사무처 입장인 것이지요?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그 카톡방 내용이 지진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었고 일반 재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는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처분조항을 보면 벌칙조항에 과태료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런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다 들어봤지만 방송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목살하고 '정말 재난방송 하기 싫다,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끊고 들어가야 하느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중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감경해 주기 시작하면 저는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데 경각심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세 사업자 중에 특히 제주방송은 실효성이 없다고 자체 판단해서 그것도 일요일 낮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제주에서 그날 방송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깔아뭉개고 목살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감경을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무처 의견은 첫 번째 위반이기 때문에 다 50% 감경해 주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첫 번째 위반이고 단순한 실수였기 때문에...

○ 김석진 부위원장

- 다 단순한 실수로 하지, 고의로 재난방송을 거부하는 사업자가 누가 있겠느냐고요.

○ 한상혁 위원장

- [별표4] 의 기준은 일반기준에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서 핵심은 사소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닐 것이고 당연히 부주의나 오류지요. 그런 과실의 정도가 사소하냐, 중대하냐 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렇지요. 그래서 제주MBC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는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부산영어방송은 착오가 분명히 있었고, 여기는 또 16명 직원의 열악한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는 감경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매일방송도 이것은 정말 사소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50% 감경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제주MBC만큼은 제대로 다 1,500만원 감경 없이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재난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실시가 의무화된 방송사의 공적 책무입니다. 의견 진술을 들은 결과, 부산영어방송재단과 제주문화방송, 매일방송 3개 사업자의 재난방송 미실시 사유를 보면 업무 담당자의 판단착오, 단순 실수 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방송사업자들이 법 위반상태를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난방송 송출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크로스체크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감안해서 저는 과태료 부과 50% 감경안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김석진 부위원장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제주 MBC의 경우에는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자인 보도국장의 자체적 판단으로 재난방송을 묵살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도 제주방송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차후에도 방송사업자들은 지진이나 호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최근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회 재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나서서 재난방송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길게 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1회 위반'이라고 해서 지난번 재난방송과 실무적인 것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이라고 50% 감경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지요?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지금까지 9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그중 1건만 MBC가 재난방송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수도 25건으로 지금까지 제일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그때는 감경하지 않고 1,500만원을 부과하셨고, 나머지 95건에 대해서는 다 750만원을 부과하셨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 사례가 있고, 물론 재난방송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전에 라디오방송 중에서 굉장히 작은 방송 국악방송에 대해 저희가 과태료 8,000만원을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또 허 욱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의견 주신 대로 제주문화방송은 원래 대로 1,500만원, 나머지는 2분의 1 감경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부산영어방송은 방통위 재난방송 관련 카톡내용을 보면 분명히 위에 '포항 규모 5.4 지진' 관련해서 답변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그것은 개설할 때 제목이고, 대화내용을 보면 지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 재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렇지만 위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방통위가 세심하게 답변을 못해 줬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에 보면 "지상파방송사는 자신들이 방송허가 권역 내에 해당하는 재난정보인 재난방송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써 놓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다음에는 좀 더 세심한 답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산영어방송에 대해 50% 감경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MBN은 3번 내보내는 동안 못 잡았다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하게 해서 여기도 감경을 해 주어야 하나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영어방송은 50% 감경해 주되, 나머지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전체적으로 의견이 제주MBC에 대해서는 1,500만원 원래 금액대로 하자는 의견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 부산영어방송과 매일방송의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50% 감경해 주자는 의견이 세 분으로서 과반을 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표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MBN에 대해 50% 감경 의견을 제가 부위원장님과 허 옥 위원님과 같이 낸 것은 MBN이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이번이 처음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 사이에 KBS, MBC 이런 큰 지상파방송들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MBN은 그 사이 재난방송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야말로 실수이고 부주의라고 봐서 50% 감경의견을 낸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전체적으로 영어방송 750만원, 제주MBC 1,500만원, 매일방송 750만원 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20-06-026 ~ 033)**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으로는 ‘(주)경성테크놀러지, 텍스트리(주), (주)비스키트, (주)다산카이스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로는 금년도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허가신청 공고·접수가 있었으며, (유)누누 등 총 9개 법인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접수하였습니다. 다만, (주)키위플러스는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허가신청법인 9개 법인에 대한 주요사항은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결격사유 조회 결과 임원 결격여부 및 법인 여부에 대해서는 결격사항이 없었으며, 모두 다 정상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심사를 개최하였으며, 심사는 1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은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일 때 적격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총 8개 법인 중 4개 법인이 허가심사에 합격하였습니다. (주)경성테크놀러지 등 총 4개 법인은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하여 적격으로, (유)누누 등 총 4개사는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부족으로 총점 70점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조건으로는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 부과하며, 향후계획으로는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붙임>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올해 첫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것인데 당초 9개 신청법인 가운데 신청 철회 법인 1곳을 포함해서 5개 신청법인이 탈락하고 4곳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무처에서 면밀히 심사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청법인 중 7곳이 영유아나 아니면 등하원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사업 분야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것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지원사업의 일원으로서 영유아 출결관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들이 복지부의 지원 및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허가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부적격받은 법인의 심사결과를 보면, 자금조달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이나 정부지원 등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사례, 그리고 위치정보 보호 관련된 기술적 설명이 부족하거나 방화벽과 같은 접근통제 방안이 없는 사례 등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된 사업자가 '19년 말 기준으로 총 223곳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현황을 점검 해서 사업을 잘하는 것과 미진한 것을 파악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허가 나간 뒤에 3년 동안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꾸준히 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을 챙겨보겠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들 통학할 때 통학 차량, 위치추적 또 우리 아이가 어디를 어떻게 가고 있다는 위치추적을 부모에게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 통학차량 안전서비스 또 영유아 찾기, 이탈·실종 방지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허가받는 사업자가 많아질수록 서로 경쟁도 되어서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질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되도록 많이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보니까 인식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에는 반드시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하고 차단벽도 쳐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업자들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절반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8.27, 또 69.16 이렇게 탈락한 사업자는 거의 근소한 차이로 합격통지를 못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자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사무처에 잘 알려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깝게 탈락했기 때문에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에게 그런 계도를 해서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우리가 서비스 질을 자꾸 높여야 합니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2월에 동일한 허가가 예정되어 있고, 이번에 탈락한 법인도 보완해서 할 수 있고, 저희가 위치정보지원센터를 통해 허가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센터를 통해 말씀하신 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적격 판정, 또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아쉽게 떨어진 사업자들에게는 계도를 해서 보완해서 다시 신청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이미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따로 의견이 없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0-06-034~037)**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의결안건 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인터넷윤리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92조 및 제104조에 따른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점검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0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음란물 유통이 많은 등 문제가 의심되는 10개 사업자를 대상

으로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대상 사업자에 대한 현황은 <붙임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과 부분입니다. 점검기간은 2019년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검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대상 10개 사업자 중 4개 사업자(이하 '피심인'이라 함)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항목 중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심인 일반현황 4개 사업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등록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 4개 사업자로서, PC와 모바일을 포함한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영화, 드라마, 게임, 성인물 등을 유통시키는 사업자가 피심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밑에 <표>를 참조하시면 (주)에이치랩, (주)블루트리, (주)아이스토리지, (주)티앤서비스의 주요사업 내용과 종업원 수 '18년도 매출액에 대해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주)아이스토리지와 (주)티앤서비스는 '19년에 과기정통부에 등록된 관계로 '18년도 매출액을 확인하기 불가하여 빈칸으로 남겼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위반 사항입니다. 위반 사항은 (주)에이치랩은 송수신 제한, 즉 필터링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 부분입니다. (주)블루트리의 위반내용은 검색 제한(금칙어) 기술적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금칙어의 검색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주)아이스토리지는 송수신 제한(필터링)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고, (주)티앤서비스는 송수신 제한(필터링)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법성 판단 부분입니다. 먼저 송수신 제한(필터링)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주)에이치랩과 (주)티앤서비스, (주)아이스토리지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음란정보에 대해 송수신(필터링)을 차단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및 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아이스토리지는 HASH 방식의 필터링은 정상 차단되었고 2019년부터 실시하도록 조치한 DNA 방식의 필터링만 일시적으로 차단되지 않았으나, 금년 1월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미 이 부분까지도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터링은 24시간 상시 작동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동작하지 않은 것은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색제한(금칙어)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블루트리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금칙어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블루트리는 PC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금칙어 차단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모바일웹하드는 2018년 12월 과기부에 등록을 시작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붙임3>으로 참조를 붙여 놓았으니까 세부내용은 <붙임3>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조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명령 부분은 (주)에이치랩을 포함한 4개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체 피심인에게는 위반행위 즉시 중지 및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부분과 두 번째로 (주)에이치랩, (주)티앤서비스, (주)아이스토리지 같은 3개 사업자에게는 불법음란정보 송수신제한(필터링) 적용 조치를 이행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는 사항, (주)블루트리에게는 검색제한(금칙어) 적용 조치를 이행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송수신 제한(필터링)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주)에이치랩, (주)티앤서비스, (주)아이스토리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같은 법 제104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별표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가중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감경 부분에 대해 사무처에서는 (주)에이치랩, (주)티앤서비스는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0%인 140만원을 각 감경하는 안과 (주)아이스토리지는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하였고, 또 송수신 제한 방식 중 2019년에 새롭게 제한한 방식인 DNA 필터링 방식만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50만원을 감경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최종 과태료는 (주)에이치랩과 (주)티앤서비스는 기준금액 700만원에 감경 20%를 적용하여 560만원을 각 부과하고, (주)아이스토리지는 기준금액 700만원에서 감경 50%를 적용하여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색제한(금칙어)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주)블루트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700만원 기준금액에서 시작해서 과태료의 가중사유는 없고, 다만 감경사유로 말씀드렸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 그리고 '18년 12월에 등록을 시작한 모바일 웹하드 서비스에서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50만원을 감경하고 최종 700만원 기준에서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은 <표>로 정리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회의에서 시정조치(안)를 결정해 주시면 2월에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3월에 시정명령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우리 위원회는 작년 1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즉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검색 및 송수신 제한을 의무사항으로 정한 바 있고, 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작년 6월과 7월에 점검한 결과가 오늘의 안건입니다. 점검대상 10개 사업자 가운데 4곳에서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현재 웹하드 업계 전체 매출은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위디스크, 파일조, 온디스크 등 상위 5개 사업자가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대상 10개 사업자 가운데는 이들 5개 상위 사업자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저희가 1년에 통상 4회 정도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총 웹하드 사업자가 40여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거론해 주신 사업자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분기에 실시했던 부분에서는 그 대상사업자가 아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실태점검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차 실태점검에서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순차적으로 하느라 그랬다는 것이지요?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예.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참고로 대규모 업체보다는 소규모 업체에서 음란물의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피심인 4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행정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피심인들이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간에 시정을 완료한 것은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모바일 웹하드 사업자 적용, DNA 필터링 등 새롭게 적용된 방식의 시행여부 점검에서 적발된 것이라는 이유로 (주)아이스토리지와 (주)블루트리에 대해 과태료의 50%나 감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은 30% 정도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웹하드 사업자들의 필터링, 즉 송수신 제한 위반이나 금칙어 위반은 종전의 사례로 봤을 때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발생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은 즉시 안전으로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회 이상 법을 위반한 누적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서 성범죄 영상물이나 불법음란물 유통을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일단 2개 사업자 20% 감경한 560만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것이고,

○ 허 옥 상임위원

- 예,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주)아이스토리지와 (주)블루트리의 50% 감경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내셔서 30% 감경하는 금액으로,

○ 허 옥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30% 감경안으로 계산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는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위반사항을 보면 불법음란 정보를 올리는 업로드 송신이 차단되지 않고 있고, 또 하나의 위반사항은 금칙어 검색이 제한 되지 않고 계속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아마 주 수입원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불법음란정보 업로드가 수입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웹하드 사업자들이 드라마나 영화, 게임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수익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음란정보는 올리는 대로 돈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위반사항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블루트리 같은 경우 가입자 수가 266만명이고, 1일 방문자수가 18,000명입니다. 연간 매출액도 70억원이고, 종업원수도 모니터링 인원까지 하면 33명이나 됩니다. 작은 기업체가 아니지요. 성인게시물 수도 하루에 올라오는 게시물 수가 2,100개입니다. 또 (주)티앤서비스도 가입자수가 325만명입니다. 여기에 1일 방문자가 1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종업원수도 모니터 요원까지 하면 20명에 육박합니다. 성인게시물 하루에 올라오는 게시물 수도 1,400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주)블루트리 같은 경우 50% 감경을 해서 35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또 (주)티앤서비스도 최종 과태료로 산정한 것이 560만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웹하드 사업자들이 350만원, 500만원 정도만 과태료를 내면 이 사업을 또 계속 위반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비용이라는 것이 수익보다는 훨씬 미미한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를 매겨봤자 계속 위반합니다. 기준금액도 왜 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는 대폭 올려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전 안건에서 자막 한번 처리 안 했다고 해서 1,500만원씩 재난방송에 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면서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근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허 육 위원님 말씀대로 3회 이상 위반되면 자동으로 시장에서 퇴출조치하거나 영업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과태료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감경해 줘니까? 이러니까 자꾸 음란물 유통이 유포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300만원 내면 또 계속 위반하는데, 그래서 위반횟수를 제한해야 하고, 3회 이상은 삼진아웃제를 해서 시장에서 퇴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의견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이 예전에 등록제 생긴 이후로 많이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태료 규정이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에서도

지금 과태료 규정이 너무 낮으니까, 저희가 더 과징금을 매긴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대책에서도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정말 불법촬영문이나 아동음란물은 그러한 수익에 대해서 몰수까지 하자는 논의가 있어서 그런 입법적인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신 삼진아웃제는 어차피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저희가 그동안 처분하는 데 있어서 조치를 완료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감경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 50%는 아니지만 30% 정도 감경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법적으로 더 벌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다른 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는 결론이 감경은 없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감경을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기준금액 700만원을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드라마나 영화, 게임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불법음란물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하나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국가기관이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터링 조치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방심위 DB도 적용하지 않고, 기본을 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 올라온 것 중에 저도 존경하는 김석진 부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감경하지 않고 원래대로 처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존경하는 김석진 부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종래의 처분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종래의 처분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 안건을 상정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일반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사업종료 및 규모 내지는 위반행위의 고의, 과실 여부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회 위반사업자일 경우 과태료 금액을 기준선을 700만원에서 시작했던 부분은 고시의 개별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700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1회 위반사업자였던 점에서 시정됐던 점을 들어서 기존 과태료 감경에 대한 기준선이 보통 20% 감경이나 50% 감경이 있었던 사례 등을 준용한 부분이 이번 안전이었는데 감경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는 대로 판단될 수 있으나 1회 사업자이고 시정조치가 위반되었던 점은 기존 과태료 부과된 사업자와의 과태료 부과의 형평을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미 과태료 기준금액이 낮기 때문에 1회 위반이라는 것은 감경사유가 될 수 없지요.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맞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제가 짚막하게 정리하면, 이것은 입법노력은 그대로 진행하되, 기준금액을 올린다거나 또 3회 이상 하면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거나 입법론은 그대로 진행하고, 현재 이 안전의 과태료만큼은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감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 음란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이것은 경감 없이 전액 그대로 기준금액을 다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과거에 경감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와 같은 형태로 하면 이것으로 인해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내고 자꾸 그런 범죄 형태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하게 처분해서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삼진아웃제는 지금도 등록을 취소하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웹카르텔 종합대책안' 가운데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법영상물을 통해 돈을 버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제벌인 과징금 부과를 신설하거나 안되면 과태료의 금액이라도 상향시켜야 합니다. 또한, 규제 강화 입법안이 추진되기 전에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이 계속적으로 누범이 된다면 행정처분으로서 등록취소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문제가 된 웹하드 사업자 한 곳을 적발해서 등록취소 요청을 했었고 과기정통부를 통해 등록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강한 조치가 있다면 이번은 종전의 사례를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여겨졌는데, 2020년 들어서 방통위가 웹하드 사업자의 이런 불법행위 관련해서 보다 더 엄격한 의지를 천명하겠다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라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법원에서도 양형기준을 세우는 것이 일관된 이런 법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 법 적용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데, 지금까지 쪽 같은 사례에 대해 요율에 차이는 있지만 감경률을 적용해 왔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것은 아니다' 해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하게 처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기존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사무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신 등록 취소 문제는 지금 법상에서도 가능하지만 3회 이상 또 과기정통부와 관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관련해서는 이번에 적용한 것은 새롭게 적용된 방식이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50%가 된 것인데, 기존 관례로 보면 조치를 완료했을 경우 20% 정도 감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적용된 방식은 저희가 특별히 기준을 잡았지만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어떤 것을 조치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앞으로 저희가 조사할 때 또 조치 완료에 대한 동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례를 보면 조치 완료 건에 대해서 20% 감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그동안의 사례를 보고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보통 조치 완료했을 경우 20% 감경이 있기 때문에 20% 감경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 ○ 김석진 부위원장

- 이런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음란물을 올려서 우리가 처벌하는 이런 예에서 그동안 과태료 경감이 있었습니까?

####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음란물 업로드 미차단, 금칙어 차단 미적용했다가 개선 완료가 되어서 20% 감경을 했었고, 또 더 미약한 곳은 1건 걸렸다고 해서 50% 감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 김석진 부위원장

- 불법음란물을 올리는 것이 범죄행위이고 범죄로 거의 사회적 악을 끼치는데 여기에 수익 구조를 만들어 주고 그것을 또 감경까지 시켜 주고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지 않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종전 안에 차후 아주 강한 조치 의견을 냈었는데 사무처 의견을 반영하면 이번에 4개 사업자 전체를 20% 감경안으로 가고, 차후 웹하드 사업자가 다시 적발되는 사례에 관련해서는 감경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의결로 선언해서 공표기간을 두고 처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도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처분함에 있어서 우리가 50% 감경하다가 전에는 20%로 감경을 했지 않습니까? 점점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20% 감경도 안 되겠다, 이것은 엄격하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허위·조작정보 폐해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만 성범죄를 유발하는 불법음란물,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그렇게 처벌수위를 점점 높여 간다는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경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6년도 상황과 2020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그만큼 바뀌었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저는 시대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음란물에 대한 사회범죄의 심각성이나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정부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시대 환경과 미디어 환경에 맞게 이것을 가중처벌은 못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감경하여 나가는 것이 경종을 울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경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그동안 계속 강화되어 온 측면이 있고, 지난번에 금칙어 단독 위반은 시정명령을 했지만 이번에는 과태료 매겼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세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고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이번에 감경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감경할 수 있다' 재량 규정인데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의견이 경감 없는 700만원으로 하는 의견에 대해서...

○ **허 옥 상임위원**

-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세 분이 동의해 주시니까 그렇게 합의하도록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 지금 논의된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2분 폐회 】